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답변서를 적정한 분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

3. 주요내용

- 용지의 크기와 여백, 글자크기, 줄간격 등에 관한 소송서류의 표준양식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준비서면의 분량은 재판장등과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쪽을 넘지 못하고, 재판장등은 이

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신설)

-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5 신설)
- 재판장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의2제2항 신설)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은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 신설)

4.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 1. 용지는 A4(가로 210mm×세로 297mm)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mm×세로 4.2mm)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의2 제목 “항소인의 준비서면 등”을 “준비서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

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생략)</p> <p>② <u>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mm·세로 297mm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u></p> <p>1. 용지는 A4(가로 210mm×세로 297mm)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 (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p> <p>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mm×세로 4.2mm)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p> <p>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p> <p>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p> <p>① <u>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u></p>

	<p>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 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 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26조의2(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① (생략)</p> <p><신 설></p>	<p>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 (행과 같음)</p> <p>②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p>

<p><신 설></p>	<p>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6